

부산지방법원 2018. 9. 5 선고 2018가단6781 판결 [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]

전 문

원고A

피고주식회사 한마음상호저축은행

변론 종결2018. 8. 22.

판결 선고2018. 9. 5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남부산등기소 1979. 6. 5. 접수 제15804호로 마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 :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.

2. 공시송달판결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)

판사이창현

별지